

붙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표

놀이시설번호	554493	놀이시설명	은평병원 발달센터 어린이놀이터	점검일시	2023. 04. 10 .
놀이기구 설치현황	조합놀이대, 충격흡수용표면제	(안전관리자)	점검자 성명	김선은 (생략)	연락처 02-300-8138
구 분	설치검사/정기시설검사	보험가입	안전교육 이수	놀이시설 정기소독	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보관

이행일(기관)	2021.12.13. (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)	2023.03.22. (영조물손해배상보험)	2023.02.27. (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)	실시	실시
시스템 입력여부	○	○	○	×	×
조치예정일 (미이행 사유)	-	-	-		

1) 정기소독 대상(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)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	소독횟수	
	4월~9월	10월~3월
- 식품접객업 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	1회 이상/ 1개월	1회 이상/ 2개월
- 대규모 점포, 의료기관		
-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	1회 이상/ 2개월	1회 이상/ 3개월
- 어린이집		
-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	1회 이상/ 3개월	1회 이상/ 6개월

2) 시설물 점검 기준

- ①양 호 : 이용자에게 위해(危害) ·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
- ②요주의 : 이용자에게 위해 ·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,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문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
- ③요수리 : 이용자에게 위해 ·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, 헐거움,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,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
- ④이용금지 :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·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, 헐거움,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

구 분	점검항목	점검결과	구체적인 상태(요주의 · 요수리 · 이용금지 시)	조치계획(예정일 포함)
1.부대시설	◦ 올타리, 의자,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	-		
	◦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	-		
	◦ 식수대,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	-		
	◦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	○		
2.놀이터 공통사항	◦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, 휘어짐	○		
	◦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	○		
	◦ 놀이터내 전기, 고압선, 유독물질,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	○		
	◦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	-		
	◦ 놀이터의 배수,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	-		
	◦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	○		
	◦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	○		
	◦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	○		
3.그네	◦ 그네고리('S' 흙)의 풀림 및 파손	-		
	◦ 그네 좌석판의 파손	-		
	◦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	-		
	◦ 그네 줄의 꼬임	-		
	◦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	-		
	◦ 그네 줄의 균형 상태	-		
	◦ 그네 추락지대까지 비단자ie의 충분 여부,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	-		
	◦ 신체부위가 낀 수 있는 틈새의 존재	-		
	◦ 금속재질의 녹 발생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	-		
	◦ 볼트나 나사의 풀림	-		
4.미끄럼틀	◦ 미끄럼틀 보호벽(난간)의 파손	○		
	◦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	○		
	◦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	○		
	◦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	○		

구 분	점검항목	점검결과	구체적인 상태(요주의 · 요수리 · 이용금지 시)	조치계획(예정일 포함)
5.흔들놀이 기구	◦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	○		
	◦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○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	○		
	◦ 볼트나 나사의 풀림	○		
	◦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	-		
	◦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	-		
	◦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	-		
	◦ 시소가 좌·우로 흔들림	-		
6.회전놀이 기구	◦ 손잡이가 흔들림	-		
	◦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	-		
	◦ 금속부분의 녹슬, 목재부분의 부식	-		
	◦ 기구의 금이 간 곳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칠음	-		
	◦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-		
	◦ 회전상태(베어링 상태)	-		
	◦ 손잡이의 파손	-		
	◦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	-		
7.정글짐	◦ 회전축의 파손, 기울어짐, 흔들림	-		
	◦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	-		
7.정글짐	◦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	-		
	◦ 금속부분의 녹슬, 목재부분의 부식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칠음	-		
	◦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-		
	◦ 파이프가 휘어짐	-		

구 분	점검항목	점검결과	구체적인 상태(요주의 · 요수리 · 이용금지 시)	조치계획(예정일 포함)
· 건너는 기구	◦ 금속부분의 녹슬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칠음	-		
	◦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-		
8.오르는 기구	◦ 그물망(체인, 타이어)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	-		
	◦ 손잡이(파이프, 체인, 타이어)의 파손(갈라짐, 휘어짐, 엉킴, 벗겨짐)	-		
	◦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	-		
	◦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	-		
	◦ 금속부분의 녹슬, 목재부분의 부식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칠음	-		
	◦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-		
9.건너는 기구	◦ 손잡이 파이프(혹은 링)가 파손(갈라짐, 휘어짐)	-		
	◦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	-		
	◦ 금속부분의 녹슬, 목재부분의 부식	-		
	◦ 금이 간 곳의 존재	-		
	◦ 페인트 칠이 벗겨짐	-		
	◦ 돌출부나 거칠음	-		
	◦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-		
10.물이용 놀이기구	◦ 급·배수 상태(물공급 노즐, 오버플로우, 배수구 등)	-		
	◦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(베어링, 이중안전장치 등)	-		
	◦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(테일, 매트 등)	-		
	◦ 수질오염 상태(부유물질 등)	-		
	◦ 기초부,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	-		

*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

* 점검결과는 ① 양호, ② 요주의, ③ 요수리, ④ 이용금지 중 택 1